

발 간 사

항상 그러하듯이 법제사를 비롯한 기초법은 항상 위기였습니다. 법과 법학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무시한 채, 오로지 실정법의 해석에만 매달리는 현실은 늘 그러했고 지금은 더 심화되었을 뿐입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1973년 학회를 창립하고, 이듬해 창간호를 간행한 『법사학연구』가 드디어 지령 제6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쁨을 회원들은 물론 법학계 나아가 전 학계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서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사학연구』 제60호에는 모두 7편의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원고 2편을 수록하였습니다. 논문이 넘쳐나는 현재에 9편의 글들은 우리 학계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조선후기 소송에 대해 많은 업적이 축적되어 있지만, ‘短訟’을 중심으로 재판절차를 치밀하게 탐구한 연구가 없다는 점은 의외입니다. 문준영의 논문은 학계에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것입니다. 식민지기의 관습과 관련된 손경찬, 이상욱의 논문은 기존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한 입론으로 향후 연구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 예산규정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김대홍의 글은 미진한 연구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현대사는 역사의 영역에서 소외된 존재입니다. 특히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연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최호동의 논문은 1987년 헌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향후 연구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부당이득과 사무관리가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법사적 고찰을 탐구한 이상훈

의 논문은 우리 민법의 해석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사학의 실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학에서 개념은 주어진 것으로 여겨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강수경의 논문은 구성요건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기본개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중세유럽의 민사 분쟁과 법(Civil Dispute and the Law in Medieval Europe)’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독일학자 Nikolaus Linder와 Kent D. Lerch의 글 두 편을 발표문의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현 제도에서는 이런 형태로도 제공해야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령 60호 기념을 해야 하지만,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회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음을 기약합니다.

옥고를 투고하신 회원님들과 바쁜 외중에도 엄격하고 성실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실무를 맡은 김준현 간사와 민속원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순을 맞은 『법사학연구』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풍성하고 알찬 학술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과 독자들의 애정이 깃든 따뜻한 질책을 바랍니다.

2019. 10. 31.

『법사학연구』 편집위원장